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97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이도희 의원 등 9인)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1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모범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선정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선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우대 및 지원 등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납세의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공적(公的)의무를 말함.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8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¹⁾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국민의무로서의 납세의무가 특히 헌법에 명기된 것은 첫째, 신분 기타 사유에 의한 특권층에 대한 우선적 대우(면세·감면)를 폐지하며 모든 국민에게 그의 능력에 따른 공평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납세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음.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나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자발적인 납세 순응에 의해 성실납세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납세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음. 현재 우리구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범납세자 등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 여짐.

○ 한편, 서울시 및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치단체명	제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31.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2017.1.5.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7.7.13.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8.12.13.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9.7.10.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2016.7.14.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2018.3.29.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특별시세’와 ‘구세’로 정의하고 있는 바 ‘특별시세’ 징수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보여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이고 우리 구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선정대상)에서 강남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하고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기준, 유공납세자는 구세 납부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 바 선정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4조(선정방법 등)제1항에서는 개인등 중에서 모범납세자등을 선정하되 모범납세자의 경우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외한다.’를 ‘제외함.’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에서 유공납세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²⁾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로 추가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조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인데 같은 조 제1항제6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여져 조례로 추가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음. 따라서 이 같은 입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항을 삭제하고 <예시>³⁾와 같이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음.

- 안 제5조(우대 및 지원) 각 호에서는 모범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호에서는 모범납세자에게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나 ‘문화상품권’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예시>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제2호에서는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3) <예시>

제4조제1항

2.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함.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과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창과 함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5)에 위반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조례」 6) 별표 1 제14호에서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호 조문상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예시>7)와 같이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또한 ‘공영주차장’ 8)에는 구청사 및 보건소 등의 ‘부설주차장’ 이 포함되지 않아 우대 및 지원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임.

4) <예시> 제5조 관련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 2. 나)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5) 표창·포상행위 제한

- 2. 시상만 가능하고 부상은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수여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성실납세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예시>

제3조(선정대상)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삼성로 별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주차장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공직선거법 상 표창과 포상을 동시에 수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이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를 수정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 시차를 두고 수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취지에서 변경하여 모범납세자 중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여 문제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면 위원회에 수정을 일임하도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97호

제안일자 : 2020.9.17.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유공납세자의 선정 요건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규칙을 위임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면제 규정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삭제(안 제3조)
- 입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에 관련 내용 삽입(안 제4조)
-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게 부적합한 조문을 삭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정기준일”을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를 “유공납세자 선정은”으로, “선정”을 “규칙으로 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상품권(지역상품권(모바일”을 “상품권[지역상품권(모바일”로, “경품 등)”을 “문화상품권, 경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모범 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하 “개인등”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p> <p>1. (생 략)</p> <p>2. 유공납세자 : <u>선정기준일</u>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직전 3년간 <u>지방세를</u> <u>체납하</u> <u>거나 징수유예</u>를 받은 사실이 없 을 것</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 략)</p> <p>제4조(선정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모범납세자등” 이라 한다)를 선정한다.</p> <p>1.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p>	<p>제3조(선정대상) ----- ----- ----- ----- ----- ----- -----.</p> <p>1. (원안과 같음)</p> <p>2. ----- <u>모범납세자 중 선정기</u> <u>준일</u>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u>징수유예</u>-----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원안과 같음)</p> <p>제4조(선정방법 등) ① ----- ----- ----- ----- -----.</p> <p>1. ----- -----</p>

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납세자는 이후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가. (생략)

----- . -----
----- 제외함

2. ----- 유공납세자 선정
은 -----
----- 규칙으로 정함

<삭 제>

② (원안 제3항과 같음)

제5조(우대 및 지원) -----

-----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2. -----

-

가. (원안과 같음)

나.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은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다.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라.·마. (생략)

바. (생략)

<삭제>

나. -----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다.·라. (원안 라목 및 마목과 같음)

마. (원안 바목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7
----------	-----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의자 : 이도희·이상애·이향숙·
이재민·김진홍·복진경·
안지연·전인수·김현정
(이상9인)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모범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선정대상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 2) 선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 3) 우대 및 지원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1)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2)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 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개인 및 단체 : 1천만원

2) 법인 : 5천만원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모범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다만, 선정된 납세자는 이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나.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

다.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라.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마.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 이력, 징수유예 이력, 포상기록 등을 적은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